

농기계종합공제 II

농기계종합공제 II란?

농업인만이 가입할 수 있는 농촌복지형 상품으로 공제목적인 농기계로 직접적으로 발생한 손해와 농기계의 운행 중 발생한 사고로 피공제자, 동거가족(피공제자와 동일 주민등록표상의 부모, 배우자 또는 형제자매), 고용인 또는 타인의 신체에 입은 손해등을 보상하는 상품

가입내용

구분	내용
상품의 구성	주계약 + 특약 (자기신체손해담보특약)
공제목적	동력경운기, 트랙터, 콤바인, 스피드 스프레이어, 승용관리기, 승용이앙기 및 그 부속작업기. 단, 농업경영이외의 상업용, 시험용, 공공업무용은 제외
피공제자	공제목적용 소유 또는 관리하는 만18세이상의 개인 또는 농업경영을 목적으로 설립된 단체로 농기계운전이 가능한 자
계약체결 단위	매 농기계마다 체결
가입한도	◆ 주계약 : 가입농기계 잔존가액 (최저 가입한도는 40만원이며, 1만원 단위로 체결) ◆ 특약 : 1,000만원 단일
공제기간	1년, 3년
공제료 납입방법	일시납
가입건수 제한	1농기계당 1건(주계약 및 특약)
취급사무소	회원농협 본소 및 지소

보장내용

구분	지급 사유	지급액
농기계손해공제금	공제에 가입한 농기계로 직접적으로 발생한 다음의 손해를 보상 ▶ 자동차, 다른 농기계 또는 다른 물체와의 충돌·접촉사고로 생긴 손해 ▶ 농기계의 추락·전복사고로 생긴 손해 ▶ 화재, 폭발, 낙뢰, 비래물, 낙하물에 의해 생긴 손해 ▶ 농기계의 전부 도난으로 인한 손해	▶ 전손시: 사고시점의 잔존가액(가입금액기준 일단위 감가상각액을 제한 금액) ▶ 분손시: 사고시점의 잔존가액을 한도로 실제손해액(수리비용) - 2만원
타인배상책임공제금	운전자가 농기계의 운행으로 타인을 사상케하여 법률상 손해배상책임을 부담한 경우 ※운전자의 범위 : 피공제자, 피공제자의 18세 이상의 동거가족 또는 고용인(피공제자가 개인인 경우 1인, 법인인 경우 5인이내에 한함) 중 운전 가능한 자	사망 : 500만원 제1급 신체장해 : 1,500만원 제2급 신체장해 : 1,000만원 제3급 신체장해 : 500만원 제4급 신체장해 : 300만원 제5급 신체장해 : 150만원 제6급 신체장해 : 100만원 ※1사고당 보상한도 : 3,000만원
운송농산물손해공제금	농기계 운행중의 사고로 운송중인 농산물에 손해발생시	실제손해액에서 5%를 차감한 금액 (1사고당 200만원, 연간 1,000만원 한도)

[LIST]